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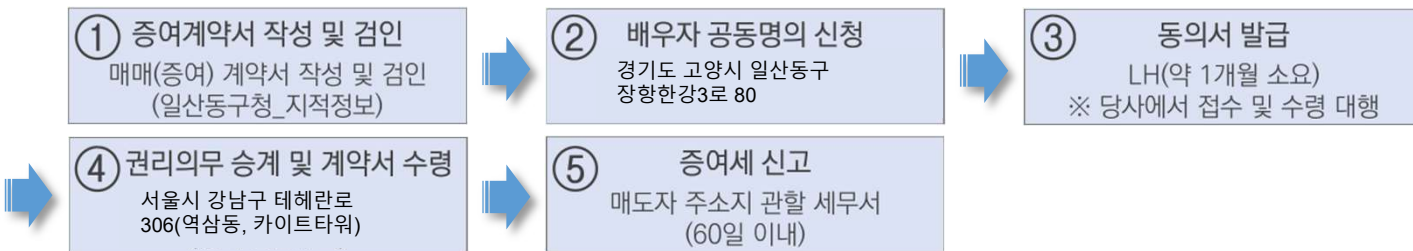
- 「주택법 시행령」제73조제4항에 따라 '고양 장항 제일풍경채' 아파트의 분양권전매(배우자 공동명의)를 신청하려는 세대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기간 내 당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분양권전매(배우자 공동명의)를 신청하려는 경우 반드시 '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' 완료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, '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'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양권전매(배우자 공동명의) 신청이 불가합니다.

■ 일정 및 장소

접수 방법	접수 기간	신청 기간	신청 장소
전화 예약제 ☎ 031-907-8782	2026. 09. 30.(수) ~ 10. 02.(금) (10:00 ~ 16:00)	2026. 10. 10.(토) ~ 10. 12.(월) (10:00 ~ 16:00)	고양장항 제일풍경채 (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한강3로 80)

■ 분양권전매(배우자 공동명의) 신청 절차



■ 필요서류

구분	장소	필요서류	
		양도인(계약자)	양수인(배우자)
①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	일산동구청 (지적정보)	▪ 증여계약서, 분양계약서(원본) ▪ 신분증, 인감도장	▪ 신분증, 인감도장
② 배우자 공동명의 신청	당사 견본주택	※ 양도인(계약자)은 대리인 신청 불가 ▪ 검인 증여계약서 ▪ 분양계약서(원본) ▪ 인감증명서(매도용, 본인발급분) 2부 (※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) ▪ 주민등록등본 2부 ▪ 가족관계증명서 2부 ▪ 인감도장, 신분증 ▪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서 및 전매동의서 (현장 접수처 비치)	▪ 인감증명서(본인발급분) 2부 ▪ 주민등록등본 2부 ▪ 인감도장, 신분증 ※ 대리인 신청 시 필요서류 - 양수인 본인 신청 시 필요서류 - 양수인 인감증명서(위임용) 1부 - 대리인 신분증
④ 권리의무 승계 및 계약서 수령	별도 안내 예정	▪ 계약서 보관증, 신분증 ※ 대리인 방문 시 필요서류 - 양수인 본인 방문시 필요서류 - 양수인 인감증명서(위임용) 1부, 신분증	

■ 유의사항

- 전매제한기간에는 배우자 공동명의로만 변경할 수 있으며, 배우자 외 다른 가족과의 공동명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
- 전매제한기간에는 공동명의 변경 후 단독명의로의 재변경은 불가합니다.
- 증여로 발생하는 세금 관련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고, 접수 후에는 취소가 제한됩니다.
- 제출서류는 발급일 1개월 이내 원본만 가능하며,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분을 제출해야 합니다.(대리인 발급분 사용 불가)
-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대출, 세금 관련, 기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,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.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서 전매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, 분양권 전매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[문의 : 031-907-8782]

※ 2026. 9. 30.(수) ~ 10. 2(금) 운영

고양 장항 제일풍경채